

의안번호	2200122
의 퇴 인	서범수 의원
회 답 일	2024. 6. 12.
추계번호	24F047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
1	안 제18조의2 (가업상속공제)	○ 도심융합특구 지역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액 조정 － 도심융합특구 지역 중소기업(법인)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				
		구분	현행		개정안(도심융합특구 지역)	
		적용 대상	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		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	중소기업
		공제 한도	가업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	300억원	300억원	공제 한도 폐지
			가업기간 20년 이상 ~ 30년 미만	400억원	400억원	
			가업기간 30년 이상	600억원	600억원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2 (가업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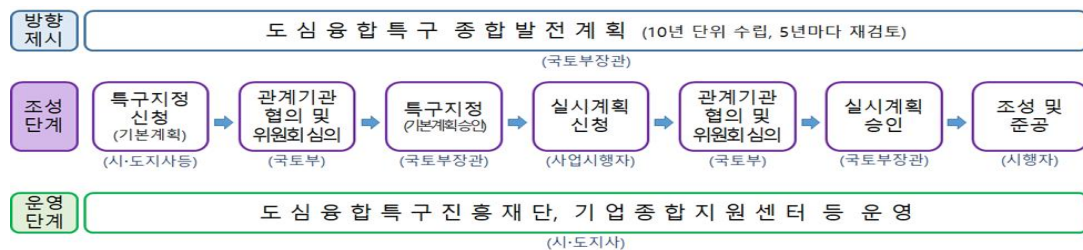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‘도심융합특구’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(법인)의 가업상속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상속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-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을 의미하며,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(「도심

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¹⁾ 제2조 및 제4조)

- 그러나 ‘도심융합특구’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(법인)의 가업상속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현재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4년 4월 25일 시행되어 ‘도심융합특구’지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동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시점과 가업용 자산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2024년 5월 현재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로, 향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음
 - －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, 지방 5개 광역시(광주·대구·대전·부산·울산)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,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로 승인신청 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
 - 참고로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
 - － 기본계획 수립(시·도지사등) → 기본계획 승인, 지구 지정(국토교통부장관) → 실시계획 수립(시행자) → 실시계획 승인(국토교통부장관)

[그림 1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 절차

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의 결정현황을 살펴보면, 2020년 106건 (4,210억원), 2022년 147건(3,430억원)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63건(1조 1,115억원)의 가업상속공제 발생

1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2023.10.24. 공포되어, 2024.4.25. 시행

[표 1]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

(단위: 건, 억원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합계
건수	106	110	147	363
공제금액	4,210	3,475	3,430	11,115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